

대통령령 제 호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대학의 건물 임차료 및 교육·연구 시설 설치, 실험·연구 장비 구입, 취업·창업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특별회계의 세출항목) 법 제34조제2항제12호에 따라 특 별회계의 세출로 할 수 있는 항 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4조(특별회계의 세출항목) 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3.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대학의</u> <u>건물 임차료 및 교육·연구</u> <u>시설 설치, 실험·연구 장비</u> <u>구입, 취업·창업 지원 등에 필</u> <u>요한 비용</u>
<u>3.</u>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	<u>4.</u> ----- -----.